



인천대학교 대학원 학칙

[시행 2023. 9. 1.] [인천대학교학칙 제858호, 2023. 9. 1., 일부개정.]

인천대학교 대학원, 032-835-8013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대학원은 학칙상의 대학교육목적을 일층 심오·정치하게 추구하는 동시에 학술연구 능력과 독창성을 함양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적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과정) ① 대학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과정을 둔다. <개정 2022. 7. 8.>

1.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(이하 “석사과정”이라 한다)과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(이하 “박사과정”이라 한다) <개정 2009. 1. 12., 2022. 7. 8.>
2. 석·박사학위 통합과정(이하 “통합과정”이라 한다)과 학·석사연계 과정(이하 “연계과정”이라 한다) <개정 2009. 1. 12., 2022. 7. 8.>
- ② 대학원은 각 학위과정 내에 협동과정 및 융합전공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따로 정한다. <신설 2015. 9. 8., 개정 2022. 7. 8.>

제3조(학과 및 정원) 본 대학원에 설치할 학과 및 입학 정원은 별표1과 같으며, 통합과정 입학 정원은 박사과정의 입학정원에 산정한다. <개정 2010. 8. 18.>

제2장 입학

제4조(입학시기) 본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.

제5조(지원자격) 본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입학할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목 1에 해당하여야 한다.

1. 석사과정, 통합과정 <개정 2009. 1. 12.>
 - 가.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(예정)한 자
 - 나.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<개정 2014. 2. 5.>
2. 박사과정
 - 가. 국내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(예정)한 자 <개정 2003. 2. 28.>
 - 나.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자 <개정 2014. 2. 5.>
3. 연계과정 <신설 2009. 1. 12.>
 - 가. 본교 학부에서 5학기 또는 6학기를 이수한 자 <개정 2023. 9. 1.>
 - 나. 학부 총 평점평균이 3.3 이상인 자 <개정 2023. 9. 1.>

제5조의2(편입학) ①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에서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.

- ②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각 학위과정의 지원 전공분야가 국내·외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(특수대학원 제외)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, 전공분야의 유사 여부는 해당 학과에서 정한다.
- ③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제2항의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, 이수학과와 취득학점 등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④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편입학을 할 수 없다.
- ⑤ 편입학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5. 16.>

제6조(전형방법) 입학전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전형방법에 의한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서류심사
2. 면접고사

제7조(지원전공분야) ① 석사과정, 통합과정, 연계과정의 지원전공학과는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학과와 동일하거나 지원학과를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해당학과에서 인정받은 자는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1. 12.>

- ② 박사과정의 지원전공학과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학과와 동일하거나 지원학과를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해당학과에서 인정받은 자는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3. 2. 28.>

③ 각 과정에서 동일하지 아니한 학과를 이수하고 입학한 자는 그 전공분야에 필요한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제8조(외국인 입학자격)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할 경우 제5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를 대학원장이 정하는 입학전형의 절차를 거쳐 입학 허가할 수 있다.

제9조(지원서류)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원서에 다음의 서류와 소정의 수험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석사과정, 통합과정 <개정 2009. 1. 12.>
 - 가. 졸업(예정)증명서
 - 나. 출신대학 진학년 성적증명서
2. 박사과정
 - 가. 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(예정)증명서
 - 나.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
3. 연계과정 <신설 2009. 1. 12.>
 - 가. 연계과정신청서
 - <목 삭제 2023.9.1.>

제3장 수업 및 재학연한, 교과, 학점, 수료

제10조(수업연한)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2년, 박사과정 2년, 통합과정 4년, 연계과정은 1년 6개월로 한다. 다만, 사업기간이 있는 특수목적사업에 대하여 석사과정의 경우 총장의 승인 하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<개정 2009. 1. 12., 2018. 12. 24., 2022. 6. 10.>

제11조(재학연한)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12조(교과과정) 각 학위과정의 교과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3조(전과) ① 대학원장은 동일계열 내에서 전과를 승인할 수 있다. 다만, 지도교수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소속된 타 계열 학과로의 전과를 승인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12.>

② 대학원장은 변경 학과 학과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전과한 학생이 변경 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7. 12.>

③ 전과를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기 시작 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7. 7. 12.>

1. 전과 신청원
2. 성적증명서
3. 전과 학점인정서
4. 신·구 전공학과장 및 지도교수 승인서

제14조(교과목의 학점) ①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하며, 각 교과목의 학점은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06. 7. 10.>

② 인턴십 연구과정은 1주에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. <신설 2006. 7. 10.>

③ 인턴십 연구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<신설 2006. 7. 10.>

제15조(수료학점)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은 석사과정(연계과정 포함) 24학점, 박사과정 36학점, 통합과정 60학점으로 한다. <개정 2009. 1. 12.>

제16조(학기당 이수학점) 학생은 매 학기 1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. 단, 복수학위제는 별도의 운영규정을 적용한다. <개정 2009. 1. 12., 2021. 3. 31.>

제17조(재입학 인정학점) 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재입학하였을 때는 그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제17조의2(편입학자의 인정학점) 편입학자에 대하여는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과에서 심사하여 동일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고 잔여학점을 부과하는 등의 편입학자 인정학점에 관한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신설 2016. 5. 16.>

제18조(대학생의 대학원 교과수강) ① 대학 3,4학년 학생이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,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 또는 통합과정의 이수 시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2.>

14.>

② 연계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부 졸업 시까지 최대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<신설 2009. 1. 12., 개정 2023. 2. 14., 2023.9.1.>

제19조(대학원생의 대학교과수강)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대학의 고급 학년과의 공통 개설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의 해당 학과장 및 학장의 승인과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 1학기에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, 총 6학점까지 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20조(타대학원 학점인정) ① 본 대학원은 타 대학(교)의 대학원과 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으며 석사 9학점, 박사18학점 이내에서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교환학점은 학기당 최대이수학점에 포함된다.

② 본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본대학교 및 타대학(교)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 9학점, 박사 18학점 이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

제21조(성적평가) 본 대학원의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.

등급	점 수	평 점
A ⁺	95 - 100	4.5
A	90 - 94	4.0
B ⁺	85 - 89	3.5
B	80 - 84	3.0
C ⁺	75 - 79	2.5
C	70 - 74	2.0
F	69 이하	0

제22조(유효성적) C급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, 수료과정에 있어서는 전 이수과목의 평균성적이 B급 이상이어야 한다.

제4장 등록, 휴학, 제적, 퇴학, 복학 및 재입학

제23조(등록) ① 대학원생은 매 학기 초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1. 12., 2018. 12. 24., 2022. 6. 10.>

② 인턴십 연구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로 징수 할 수 있다. <신설 2006. 7. 10.>

③ 그 밖에 대학원생의 등록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 <신설 2022. 6. 10.>

제24조(휴학)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3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 2. 5.>

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통산하여 5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4. 2. 5.>

③ 제2항의 기간에 군복무 및 임신·출산·육아로 인한 경우와 국가재난, 천재지변 또는 심각한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하여 휴학이 불가피한 것으로 대학원장이 인정한 학기의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4. 2. 5., 2020. 5. 4.>

제25조(제적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.

1.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않은 자
2.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
3.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

제26조(퇴학)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제27조(복학 및 재입학) ① 복학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② 재입학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, 퇴학 또는 제적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한다.

제5장 학생의 지도, 장학금 및 등록금 감면

제28조(학칙준수) 학생은 본 대학원 학칙을 준수함은 물론 대학원장의 지도를 받아 학업에 전념해야 한다.

제29조(징계)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은 이를 징계할 수 있다.

제30조(장학금 및 등록금 감면)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총장은 장학생 선발 당시 대학원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으로서 인천대학교 및 인천광역시 등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<개정 2017. 7. 12., 2020. 2. 14.>

③ 외국인 재학생은 정원 외 학생이므로 등록금중 감면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. <신설 2005. 10. 14.>

제6장 공개강좌 및 외국인 특별생

제31조(공개강좌) 본 대학원에 직무·교양·연구상 심오한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.

제32조(연구생)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지정과목에 한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.

제33조(연구실적증명) 연구생으로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1에 의한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.

제34조(외국인특별생)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석·박사과정에 입학할 경우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.

제7장 직제와 대학원위원회

제35조(직제) 본 대학원에는 원장과 부원장 외에 각 학과마다 3인 이상의 교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4. 2. 5.>

제36조(학과장 및 지도교수) 본 대학원에는 각 학과마다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을 두고, 개별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.

제37조(대학원위원회의 구성) ①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위원회를 둔다.

② 대학원위원회는 15인 이내로 하되,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원장은 당연직으로 하며, 위원은 본 대학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03. 11. 5., 2012. 3. 7., 2014. 2. 5.>

제38조(위원의 임기)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39조(위원회의 기능)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학·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2.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·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
3.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4. 대학원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5.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40조(위원회의 의결방법)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 위원장은 의결권을 갖는다.

제8장 준용규정 및 기타

제41조(논문의 공표 및 지도) ①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을 관련학회지, 정기간행물, 외국 국제학술지, 학술세미나 발표 등을 통해 외부에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제1항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성실하게 지도하여야 한다.

제42조(준용규정) 그 밖에 대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이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인천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. 다만, 대학원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, 학위논문 및 학위(복수학위 포함)수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 <개정 2006. 7. 10., 2022. 6. 10.>

부칙 <제00059호, 1995. 11. 20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118호, 1998. 5. 1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130호, 1998. 8. 14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162호, 1998. 12. 18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190호, 1999. 11. 30.>

(시행일)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이 학칙 발령당시 토목공학과와 전자계산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해당학과를 재학중인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00214호, 2000. 11. 20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223호, 2001. 2. 16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244호, 2001. 9. 5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253호, 2001. 10. 25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254호, 2001. 10. 30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283호, 2003. 2. 28.>

이 학칙은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00307호, 2003. 11. 5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340호, 2005. 1. 20.>

이 학칙은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00362호, 2005. 10. 14.>

이 학칙은 200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365호, 2005. 12. 21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385호, 2006. 7. 10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399호, 2007. 2. 5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416호, 2007. 8. 24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461호, 2009. 1. 12.>

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490호, 2009. 6. 26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506호, 2009. 7. 8.>

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527호, 2010. 2. 26.>

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575호, 2010. 8. 18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591호, 2011. 2. 8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598호, 2011. 2. 28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637호, 2012. 3. 7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658호, 2012. 9. 25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720호, 2013. 12. 2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735호, 2014. 2. 5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779호, 2015. 9. 8.>

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788호, 2016. 5. 16.>

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791호, 2016. 9. 28.>

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806호, 2017. 7. 12.>

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808호, 2017. 9. 22.>

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820호, 2018. 12. 24.>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학칙 시행 당시 재적생에게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. 다만,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수료 학점을 충족한 학생은 개정 학칙에 따른 수업 연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.

부칙 <제00827호, 2019. 9. 16.>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학칙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00831호, 2020. 2. 14.>

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835호, 2020. 5. 4.>

이 학칙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840호, 2020. 12. 8.>

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841호, 2021. 3. 31.>

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845호, 2022. 6. 10.>

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847호, 2022. 7. 8.>

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0851호, 2023. 2. 14.>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별표 1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학칙 시행 당시 일어일문학과, 신문방송학과 재적생에게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.

부칙 <제00855호, 2023. 4. 10.>

이 학칙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00858호, 2023. 9. 1.>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학칙의 별표 1 시행 당시 종전의 학칙에 따라 재적중인 메카트로닉스공학과 학생에게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11.2.28., 2011.3.7., 2012.9.25., 2013.12.2., 2015.9.8., 2016.9.28., 2017.9.22., 2019.9.16., 2020.12.8., 2023.2.14., 2023.4.10., 2023.9.1.>

대학원 과정 설치학과 및 계열별 입학정원

석사과정 · 연계과정 (4계열 49학과, 3개 협동과정)	입학정원 238	박사과정 · 통합과정 (4계열 41학과, 6개 협동과정)	입학정원 113
(인문 · 사회계 22학과) 국어국문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일본지역문화학과 중국어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윤리학과 행정학과 도시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문헌정보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경제학과 동북아통상학과 소비자학과 관광컨벤션엔터테인먼트학과		(인문 · 사회계 17학과, 2개협동과정) 국어국문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영어영문학과 일본지역문화학과 중국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경제학과 동북아통상학과 소비자학과 도시계획 · 정책학과(협동과정) 유아 · 숲 · 자연교육학과(협동과정) 관광컨벤션엔터테인먼트학과	
(자연과학계 7학과)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학과 생명과학과 해양학과 의류학과 뷰티산업학과		(자연과학계 7학과)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학과 생명과학과 해양학과 의류학과 뷰티산업학과	
(공학계 16학과, 3개 협동과정) 기계공학과 바이오-로봇시스템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안전공학과 에너지화학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 도시건설공학과 건축학과 생명 · 나노바이오공학과 학연산협동과정 (한국생산기술연구원)		(공학계 15학과, 4개 협동과정) 기계공학과 바이오-로봇시스템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안전공학과 에너지화학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 건축학과 생명 · 나노바이오공학과 기후국제협력학과(협동과정) 도시용 · 복합학과(협동과정) *지능형반도체공학과(협동과정)	7 7

기후국제협력학과(협동과정) *지능형반도체공학과(협동과정)	26	*인공지능학과(협동과정)	
(예술·체육계 4학과)		(예술·체육계 2학과)	
체육학과 미술학과 디자인학과 공연예술학과		체육학과 디자인학과	

*의 첨단분야학과 정원은 총정원 범위 내에서 별도 관리
 <석사:지능형반도체공학과(결손인원12명+교원확보14명)>
 <박사:지능형반도체공학과(교원확보7명), 인공지능학과(교원확보7명)>

[별지 서식 1]

연구 실적증명서

제 호

성명 :

생년월일 : 년 월 일생

이 분은 본 대학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년 월간을 연구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기에 이를 증명함.

년 월 일

인천대학교 대학원장